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 보고서**  
**[내부 감축실적]**

20XX. XX. XX.

업체 정보	업체명				
	부 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담 당 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E-mail			

※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내용을 기술하되, 복수의 사업을 시행하여 각각의 감축실적이 도출된 경우 별개의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1

##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요

### 1) 사업명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의 명칭을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이 나타나도록 기술한다.

### 2) 사업 목적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한 목적을 기술한다.

### 3) 적용 설비 및 기술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도입한 감축 설비 및 기술의 명칭, 원리 및 감축 효과 등을 기술하고, 해당 설비 및 기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4)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 연도 및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 및 해당 감축설비 및 기술에 따라 감축실적이 최초 발생한 연도를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는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대한 계약일, 최초 지출일,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중 가장 빠른 시점(時點)을 말하고, 감축실적이 최초 발생한 연도는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는 시점(始點)을 말하며, 해당 연도의 해당 일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5)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감축기간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1) 법적 추가성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사업과 그에 따라 발생한 감축실적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술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해당 법령의 조항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기재 또는 첨부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 따른 감축실적이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 해당 의무를 초과하여 발생한 실적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사업과 그에 따라 발생한 감축실적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해당 의무의 범위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은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 2)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여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투자한 비용 등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되었는지를 기술하고, 투자비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적용하는 방법론별로 제시하는 경제적 추가성 분석과는 달리 해당 감축사업과 관련한 투자비용 수반 여부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감축실적이 설비 운영 변화, 행태 개선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된 것이 아니면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 1) 방법론 일반사항

## 1-1) 방법론의 명칭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의 명칭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하 “CDM 사업”),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명칭에 따라 기술한다.

## 1-2) 방법론의 적용조건 및 타당성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CDM 사업, 외부사업 방법론의 적용조건에 따라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2) 사업의 경계

### 2-1) 대상시설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시설을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업체별 할당 신청시) 또는 해당 이행연도(업체별 추가 할당 신청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술하되,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특히, 기존시설을 고효율 시설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존시설(기존시설이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존시설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술)과 교체 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기술한다. 또한, 이 경우 해당 시설에 감축 설비 및 기술이 도입된 사실, 해당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또는 배출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2-2) 사업 시행 전 공정 및 설비 현황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공정 및 기존 설비 현황을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공정 및 설비 현황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 등이 구분되도록 기술하고, 할당대상업체가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 2-3) 사업 시행 이후 공정 및 설비 현황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공정 및 변경된 설비 현황을 사업 시행 전과의 차이점이 부각되도록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공정 및 설비 현황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 등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 2-4) 사업경계의 적용 조건 및 타당성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가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사업경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고, 해당 사업의 경계가 해당 방법론에서 정한 사업경계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가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사업경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감축실적은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 3-1)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이 CDM 사업, 외부사업의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이 CDM 사업, 외부사업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감축실적은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 3-2)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의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외부사업, CDM 사업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감축기간이 해당 이행연도 전체가 아닌 경우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전의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고시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절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 3-3) 감축 사업 후 배출량(이하 “사업배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의 사업배출량을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사업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감축기간이 해당 이행연도 전체가 아닌 경우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전의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지침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절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할당대상업체는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한 사업배출량과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에 대하여 명세서에 보고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정합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경계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 모니터링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부분의 배출량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 3-4) 누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누출량을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누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과 도출 근거를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누출량 산정방법에서 산정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지침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절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 3-5)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시킨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기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사업배출량과 누출량을 모두 차감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 4) 모니터링 방법론

할당대상업체가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산정에 적용한 데이터 및 인자를 도출한 근거를 해당 이행연도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따라 기술하고,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해당 부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 4

#### 증빙자료 목록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목록을 기술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로 첨부한다.

## ※ 유의사항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7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가 이 보고서를 통하여 증빙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사유 검토 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검토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보고한 감축실적의 양보다 적게 인정하거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사유 검토와 관련 해서 이 보고서의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할당대상업체가 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출권의 할당을 받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할당 및 추가 할당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42조에 따라 해당 업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 벌칙(1억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 보고서 [외부 감축실적]

20XX. XX. XX.

업체 정보	업체명				
	부 문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 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E-mail			

※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내용을 기술하되, 복수의 사업을 시행하여 각각의 감축실적이 도출된 경우 별개의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1

##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요

### 1) 외부 감축실적 구분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KOC를 폐기하고 사전할당 시 할당 받으려는 경우 감축실적 구분 후 “4. KOC 폐기에 따른 감축실적 제출”에 맞추어 작성이 필요하다. (해당 시 )

- 타 기업 감축활동 지원
- 폐기물 재활용
- KOC 폐기 (“4. KOC 폐기에 따른 감축실적 제출” 작성)

### 2) 사업명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의 명칭을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이 나타나도록 기술한다.

### 3) 사업 목적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한 목적을 기술한다.

#### 4) 적용 설비 및 기술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도입한 감축 설비 및 기술의 명칭, 원리 및 감축 효과 등을 기술하고, 해당 설비 및 기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사업자(할당업체)와 타기업에 대한 내용 포함).

#### 5)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 연도 및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 및 해당 감축설비 및 기술에 따라 감축실적이 최초 발생한 연도를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는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대한 계약일, 최초 지출일,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중 가장 빠른 시점(時點)을 말하고, 감축실적이 최초 발생한 연도는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는 시점(始點)을 말하며, 해당 연도의 해당 일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6)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감축기간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1) 법적 추가성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사업과 그에 따라 발생한 감축실적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술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해당 법령의 조항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기재 또는 첨부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 따른 감축실적이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 해당 의무를 초과하여 발생한 실적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사업과 그에 따라 발생한 감축실적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해당 의무의 범위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은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 2)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여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투자한 비용 등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되었는지를 기술하고, 투자비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적용하는 방법론별로 제시하는 경제적 추가성 분석과는 달리 해당 감축사업과 관련된 투자비용 수반 여부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감축실적이 설비 운영 변화, 행태 개선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된 것이 아니면 업체별 할당량 산정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 1) 방법론 일반사항

## 1-1) 방법론의 명칭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의 명칭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하 “CDM 사업”),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명칭에 따라 기술한다.

## 1-2) 방법론의 적용조건 및 타당성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적용조건에 따라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2) 사업의 경계

### 2-1) 대상시설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타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시설에 대하여 기술한다. 타기업이 관리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일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술한다.

### 2-2) 사업 시행 전 공정 및 설비 현황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타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공정 및 기존 설비 현황을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한다. 타기업이 관리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일 경우 공정 및 설비 현황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 등이 구분되도록 기술한다.

### 2-3) 사업 시행 이후 공정 및 설비 현황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공정 및 변경된 설비 현황을 사업 시행 전과의 차이점이 부각되도록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한다. 타기업이 관리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일 경우 공정 및 설비 현황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 등이 구분되도록 기술한다.

## 2-4) 사업경계의 적용 조건 및 타당성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가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사업경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고, 해당 사업의 경계가 해당 방법론에서 정한 사업경계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가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사업경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감축실적은 업체별 할당량 산정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 3-1)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이 CDM 사업, 외부사업의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이 CDM 사업, 외부사업의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감축실적은 업체별 할당량 산정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 3-2)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의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외부사업, CDM 사업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감축기간이 해당 이행연도 전체가 아닌 경우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전의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고시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절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 3-3) 감축 사업 후 배출량(이하 “사업배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의 사업배출량을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사업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감축기간이 해당 이행연도 전체가 아닌 경우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전의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지침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절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타기업이 관리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일 경우 할당대상업체(사업자)는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한 사업배출량과 타기업의 명세서에 보고된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정합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3-4) 누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타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누출량을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누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과 도출 근거를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누출량 산정방법에서 산정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지침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절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 3-5)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시킨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기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사업배출량과 누출량을 모두 차감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3-6) 감축량 소유권 해당분 산정

최종 산정한 감축량을 할당대상업체(사업자)와 타기업의 소유권 비율 및 해당분을 기술한다.

구 분	사업자명	사업자 구분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tCO <sub>2</sub> -eq	%
사업자 1		ex) 할당대상업체		
사업자 2		ex) 관리업체		
타기업 1		ex) 비관리업체		

4) 모니터링 방법론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산정에 적용한 데이터 및 인자를 도출한 근거를 첨부한다. 타기업이 할당대상업체일 경우 이행연도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따라 기술하고,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해당 부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4****KOC 폐기에 따른 감축실적 제출****1) 사업명**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외부사업으로 감축실적(KOC)으로 인증받은 사업의 명칭을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이 나타나도록 기술한다.

**2) 사업 목적**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한 목적을 기술한다.

**3) 적용 설비 및 기술**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도입한 감축 설비 및 기술의 명칭, 원리 및 감축 효과 등을 기술하고, 해당 설비 및 기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사업자(할당업체)와 타기업에 대한 내용 포함).

#### 4)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 연도 및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 및 해당 감축설비 및 기술에 따라 감축실적이 최초 발생한 연도를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는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대한 계약일, 최초 지출일,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중 가장 빠른 시점(時點)을 말하고, 감축실적이 최초 발생한 연도는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는 시점(始點)을 말하며, 해당 연도의 해당 일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하여 해당 감축실적의 유효기간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5)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감축기간 및 모니터링 기간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6) 감축량 소유권 해당분 및 폐기분 산정

최종 산정한 감축량을 할당대상업체(사업자)와 타기업의 소유권 비율 및 해당분 및 폐기분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KOC 인증 폐기번호 : 0000-0000-0000(YYYY-MM-DD)
- 일반사항

구 분	사업자명	사업자 구분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폐기분
			tCO <sub>2</sub> -eq	%	tCO <sub>2</sub> -eq
사업자 1		ex) 할당대상업체			
사업자 2		ex) 관리업체			
타기업 1		ex) 비관리업체			

5

증빙자료 목록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목록을 기술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로 첨부한다.

## ※ 유의사항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7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이 보고서를 통하여 증빙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사유 검토 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검토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보고한 감축실적의 양보다 적게 인정하거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산정 신청사유 검토와 관련해서 이 보고서의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할당대상업체가 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출권의 할당을 받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할당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42조에 따라 해당 업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 벌칙(1억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